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 조 제 3 항 제1호			
1)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100	200	300
2)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3)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 조 제4항 제1호	50	100	150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 조 제 1 항 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	500	1,000
2)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00	1,500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50	100	150
마.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건축물석면지도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700	1,000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바.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200	350	500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사.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 제3호	50	100	150
아.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 제2호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 제4호	50	100	15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제3호	100	200	300
카.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1,000	1,500	2,000
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제4호	200	300	500
파.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 제5호	50	150	200
하. 법 제30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제5호	100	200	300
거.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500	700	1,500
너.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 제6호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100	200	300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300	500
-----------------------------------	--	-----	-----	-----